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권 ***

피신청인 주식회사 #####

2015. 8.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漢 白)

담당변호사 이 진 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권 ###(#####)

 원주시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 진 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4층(서초동, 양진빌딩)

전화 02-535-6903, 팩스 02-596-5550

피신청인 주식회사 #####

 강원도 원주시

대표이사 ###

피보전권리 ①상법 제396조 제2항 근거 주주명부,정관 열람 및 등사청구권

 ②상법 제466조 제1항 근거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신청인,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피신청인 회사는 2012. 4. 27. 부동산개발,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이고, 그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 현 대표이사는 ###입니다.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2. 신청인은 위 ###, ###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 약정금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에 의하여, 위 ###, ###로부터 그들 보유 주식 중 3,000주씩을 이전받아 총 6,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 사건에서 신청인은 2억 5천만원 및 주식 30%(6,000주)의 양도를 구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2억 5천만원 부분은 기각되었고, 현재 신청인(위 사건 원고)은 2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그 부분만 다투어

지고 있고 주식양도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 소갑 제2호증의1 서울고등법원 2014나##### 약정금 판결
- 소갑 제2호증의2 위 사건 원심인 여주지원 2013가합#### 판결문
- 소갑 제2호증의3 사건진행내역서

II. 이 사건의 간단한 배경에 대하여

본 소송의 배경은 소갑 제2호증의 1,2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으로 같음하고, 본 소송에서는 사건 이해측면에서 위 내용을 간략히만 기재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들 매입

신청인은 2011. 5. 16. 중고차매매단지 조성목적으로 소외 ###, ###로부터 ##### 138-5 입야 10,378㎡, 같은 리 산 138-9 입야 734㎡, 같은 리 산 140 입야 12,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함)를, 금 36억원에 매입하고 금 3.6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위 부동산들은 지번변경과 병합을 통하여 ##### 251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 소갑 제3호증의1~3 구 토지등기부등본(지번변경사항이 확인됨)
- 소갑 제4호증의1 현 토지등기부등본(### 251)

2. 소외 ###, ###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

(1) 그 후 신청인은 위 상태에서 2012. 1. 26.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물론,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3.6억원은 위 ###, ###가 신청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돈도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 9.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

(2) 그리고, 부족한 중도금 6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 제비용을 부담하고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위 ###, ###의 부탁으로, 신청인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 ###가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중도금 6억원(실제로는 대출제비용을 공제한 576,342,000원 입니다)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2012. 9. 25. 원주지원 2012가합2695 사건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을 한동안 괴롭혔고, 최근에서야 수차례의 추심을 통해 변제를 받아냈습니다.

- 소갑 제5호증 강제집행소송 사건진행내역서

(3) 또한, 신청인은 위 자들로부터 잔금대여의 부탁도 받고, 2012. 4. 27. 경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 임야 11731m²)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을 주채무자로, ###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15억원)의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해주었습니다.

- 소갑 제6호증 여신거래약정서(15억 관련-신청인이 물상보증인임이 확인됨)

그리고, 당시 그러한 물상보증뎡가로 약정한 것이 주식 30%이전, 수수료조금 2.5억원의 지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신청인 회사 주식 30%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의 파트너로 참가시켜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 ###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잔금용으로 신청인의 물상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만기일 2015. 4. 27.) 15억원을 미상환하여, 신청인이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현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소갑 제7호증 경매사건내역서

3.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

그 후 소외 ###, ###는 2012. 4. 27.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등기도 중간생략등기로서 ###, ###는 등기부에 빠져있고,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등기 되자마자, 2012. 5. 7. #####에 이 사건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돈은 신청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위 6억원), 신청인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고 금융권에서 차입한 금원(15억원)으로도 부동산 매매잔금이 부족하자, 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갑 제3호증의1~3 구 토지등기부등본

그리고, 2년정도 후인 2014. 7. 23. 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복합상가인 소위 ‘아울렛’이라는 형태의 상가를 짓고, 외부회사인 주식회사 #####에 35억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 소갑 제4호증의2 건물등기부등본 일부

4. 소외 ###, ###의 약정불이행과, 피신청인 회사와 비상식적인 자금거래

(1) 그러나, 소외 ###, ###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잔금으로 신청인의 물상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만기일 2015. 4. 27.) 15억원을 은행에 변제하여 담보를 말소시켜주지도 않고, 신청인에게 주식 30%, 수수료 2.5억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15억원 물상보증시 주식 30%, 수수료 2.5억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갑 제2호증의 1 판결문과 같은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됨에 따라, 2015. 4. 6.자로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신청인은 여기서 이상한 자금거래를 확

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이 본 건 소송을 청구하게 된 주된 이유인 바, 이하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내용하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Ⅲ. 피보전권리 - 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1. 주주의 주주명부 및 정관 열람 및 등사청구권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주명부, 정관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 소갑 제2호증 1 판결문

(2) 이러한 주주명부, 정관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상법¹에서는 주주명부,

¹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정관을 본점 비치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람·등사에 주식수의 제한도 없고, 그 장소 및 시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주인 신청인들이 그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215972 판결 역시 판결이유에서 이와 똑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현재 피신청인 회사는 소갑 제2호증의 1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명의개서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더더욱 열람·등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및 등사청구권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²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21597

현행 상법은, 사채원부와 이사회 의사록, 영업보고서 등 위 법 제396조 제1항, 제447조, 제447조의2 소정의 장부 및 서류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는 모든 주주에 대하여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되(다만,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 각 서류들을 제외한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제한하고, 그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사할 수 있습니다.

- 소갑 제2호증의1 판결문

(2)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를 보건대, 위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경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장부 또는 장부작성의 기초서류이거나, 회사의 경리상황을 표시한 서류, 위와 같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서류들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서류에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은 2015. 8. 6.자 내용증명 및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의 위법하고 부정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장부,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아래 3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 이처럼 신청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법 제 466조 제1항의 주체, 대상, 방식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가 부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³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

³우리 판례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 그 부당성의 입증책임을 회사에 부담시키고

니다

- 소갑 제8호증 신청인 발송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내용증명 및 도달증
명원

3.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의 이유

가. 상법 및 판례상 이유의 내용에 대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충족되는 바,

이 때 그 이유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

있습니다.

는 경우”(서울지법 1998. 4. 1.선고 97가합68790 판결) 등이라 하겠습니다.

판례의 경우, 위와 같은 정도의 이유가 있으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

(1) 위 Ⅱ 언급과 같이 신청인이 소외 ###, ###에게 1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채권최고액 19.5억원)을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30%를 받기로 했던 것은, 위 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도록 물상보증을 해주면서, 그 회사경영 또는 회사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2) 그런데, 최근 확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위법한 거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갑 제9호증 피신청인 회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가) 먼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변제가 허위 차입으로 인한 배임거래로 보
입니다.

1) 즉, 소갑 제9호증 11페이지를 보면 회사는 2014년도 회계년도 말 기준 금융
권부채로 금 57.6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 대표이사부터 차입한 금원도
2013년도에는 약 71억원, 2014년도에는 20억원(71억원 중 일부 변제하여 2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있어, 위 금융권 부채가 모두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대표이사 ###는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6억원은 물론, 신청인의
물상보증으로 대출금을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토지땀가도 치른 후 그 변제(대
출만기일인 2015.4.27. 이후에도 대출원금 15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물상제공한 부
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춘천지방법원 ##### 임의경매절차
가 진행중입니다)조차 현재 완료하지 않은 자로서, 회사에 71억원의 금전을 대여하였
다는 내용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갑 제9호증 중 관련부분 인용 - 제11~12페이지]

<금융권 차입내용>

(1) 당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이자율(%)	금액
일반대출	원주농협만종지점	5.04%	1,290,000
"	"	5.37%	2,020,000
"	원주축산농협원문로지점	5.08%	2,450,000
합 계			5,760,000

<대표이사로부터 차입 및 변제내용>

(3)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주.임.종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금액	
	당기	전기
대 표 이 사	2,077,731	7,135,622

특히, 위 소갑 제9호증 14페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대표이사 ###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과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공사비도 아직 40억 상당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갑 제9호증 중 관련부분 인용 - 제14페이지]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채권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거래처명	내역	당기	전기
건물 및 건설중인자산	(주)근우종합건설	건물 공사대금	2,754,545	2,754,545
미지급금	"	"	1,350,000	2,485,000
주임종단기차입금	대표이사	차입	2,077,731	7,135,622

따라서, 대표이사가 2013년도 71억원 상당을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에게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자금력이 의심되어 대여여부도 불확실하고, 설령 대여하였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썼을 것인데 위와 같이 공사대금조차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 대표이사 ###가 허위채권을 만들어 회사가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취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 소갑 제10호증 ##### 등기부등본(###가 대표이사임)

2) 설령, 대표이사가 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①그러나, 회사설립후 2012. 5. 7. 이 사건 부동산들을 회사로 등기이전하며 토지잔금 중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6억원을 받았

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채무가 아니라 개인채무인 점

②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상당금이 신청인(###)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계약금 3.6억원, 중도금 약 6억원, 물상보증 대출금 15억),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이용하여 은행대출을 받기 전 신청인에게 계약금 3.6억원은 물론, 그 외 차용금 약 6억원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동산을 회사에 고가에 매도한 후 그 자금 (은행대출로 조달된 회사자금)으로 일부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배임조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는 ①소외 ###, ###가 토지대금도 정상적으로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신들의 토지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일으키게 한 후 수령하고, ②자신들의 신청인에 대한 개인채무 약 9.6억원의 원금과 이자 변제, 신청인이 물상보증한 15억원 관한 (주)#####의 채무와 이자⁴를 회사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2012. 5. 7. 자 은행대출을 통해 토지잔금 중 부족한 6억원도 해결하였던 바,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기는 커녕 회사에 손실을 가하면서 사리를 취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배임형태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⁴ 소갑 제5호증 여신거래약정서를 보시면 15억원의 채무자는 (주)#####입니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이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주)#####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위법한 행위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는 공사계약에서 대금 부풀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그 대금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4호증상 확인되는 바로는 공사비가 약 52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①일단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②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갑 제4호증상 약 77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공사비가 매우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③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비 부풀리기는 거의 법규화된 관행처럼 항시 행해지고 있는 데, 자기거래일 경우 더더욱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공사관련 서류와 지급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소갑 제11호증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페이지를 보면, #####이라는 자회사도 등장하는데, 신청인이 알고 있기로 위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건물건축시 토지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 회사도 특수관계인으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서 이 업체에 지급된 금원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정당한 금원인지, 부풀리기를 한 금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갑 제11호증 증인신문조서

〈소갑 제11호증 1페이지 발췌〉

1-1. 문: 증인은 주식회사 근우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가요.

 답: 예.

1-2. 문: 증인의 회사는 한라엔지니어링과 무슨 관계인가요.

 답: 자회사입니다.

1-3. 문: 증인은 주식회사 우장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답: 주식회사 우장은 모르겠습니다.

1-4. 문: 주식회사 문막로즈아울렛의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 2012. 5.경 증인, 원고,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주주를 구성하였습니다.

1-5. 문: 주식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증인, 원고, 성명불상자가 40:30:3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현재 상가건물을 완공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35억원에 전체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대차거래,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주)##### 및 한라엔지니어링과의 공사거래와 공사비지급 문제를 볼 때, 보증금 35억원도 현재 적법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이사에 대한 변제나 공사비 지급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 또한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갑 제4호증 중 발췌〉

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당사는 주식회사 엠디리테일과 당사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4년 10월 20일자로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엠디리테일의 유통점으로 운영하면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동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으로 3,500백 만원을 수취하였고 이는 임대보증금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는 대표이사 ###의 정관이나 법령의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실시 되는 바, 신청인은 소외 ###, ###의 15억원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하고 30%의 주식을 받은 주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바, 이로써 이 사건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열람·등사가 필요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이유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회계장부 및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기재합니다)

(1)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 및 회사의 변제관련하여

①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차용금 계정원장

② 위, ① 관련 기초장부로서 대표이사 대여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대여금 입금 날짜로부터 현재까지의 입·출금내역자료 (압축기재되었을 경우, 세부 입출금내역서)

③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차용금(가수금) 변제관련, 계정원장, 그 기초자료로서 통장거래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일체

④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또는 그외 금융기관에 지급하였거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모든 이자내역관련 은행거래내역서,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된 대출계약서 등 관계서류

(2)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관련(주식회사 ##### 등과의 공사계약관련)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토지공사 및 건물신축에 있어, 공사비 지급내역 일체를 알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과 계정원장, 매입·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② 위, ①과 관련된 서류로서, 공사계약서 일체, 설계도 및 관련 변경·수정 계약서 일체 (#####과 한라엔지니어링에 대한 것)

(3)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35억원 임차보증금 관련

① 그 보증금 관련 계정원장, 수령내용이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서(수령이후 1개월 까지), 주식회사 #####과의 세금계산서

②위 보증금의 보관상황을 알 수 있는 은행거래자료 또는 투자관련서류 등 35
억원의 현재 상황을 표시하는 자료들 일체

③위 ①과 관련된 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

(4) 위 자료들은 기본적인 회사의 회계자료이거나, 그 회계자료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로서, 모두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IV. 보전의 필요성

1. 주주명부·정관의 경우

(1)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은 회사에 상시 비치해 놓고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주
주 요구가 있으면 열람시켜주어야 할 상법상 의무가 있는 주주명부에 대하여, 신청
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인의 본 가처분에 의해 주주명부와 정관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
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도 없다 할 것
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1) 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긴급성도 인정되므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21597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진들의 부정행위가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소송기간 중 위 장부 및 서류가 조작되거나 은닉 또는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이익형량을 해볼 때에도, 신청인은 회사 주주로서 상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에서 발생한 법령 및 정관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함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일 뿐으로서 특별히 회사 이익을 침해하거나 업무에 중대한 방해가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의 입장에서 상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므로, 본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열람·등사의 대상인 회계장부 등의 훼손, 폐기, 은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 가처분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드리오니, 부디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이 회계장부 등을 은닉, 훼손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V. 결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1호증 피신청인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 소갑 제2호증의1 서울고등법원 ##### 약정금 판결
- 소갑 제2호증의2 위 사건 원심인 여주지원 ##### 판결문
- 소갑 제2호증의3 사건진행내역서
- 소갑 제3호증의1~3 구 토지등기부등본
- 소갑 제4호증의1 현 토지등기부등본(사제리 251)
- 소갑 제4호증의2 건물등기부등본
- 소갑 제5호증 여신거래약정서(15억 관련)
- 소갑 제6호증 강제집행에 관한 사건진행내역서
- 소갑 제7호증 경매사건내역서
- 소갑 제8호증 신청인 발송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내용증명 및 도
달증명원
- 소갑 제9호증 피신청인 회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 소갑 제10호증 ##### 등기부등본
- 소갑 제11호증 #####사건 증인 ### 증인신문조서

첨 부 자 료

- 위 소명자료 각 1부
-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5. 8.

신청인의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漢 白)

담당변호사 이 진 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귀중

별지

열람 및 등사 대상 장부 등

1. 피신청인 회사의 2015. 7. 말 기준 주주명부, 정관
2. 피신청인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차용금 계정원장
3. 위 2관련 기초장부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의차용금 입금 날짜로부터 현재까지의 입·출금내역자료 (압축기재되었을 경우, 세부 입출금내역서 포함). 만약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그 입출금 관련 현금거래 원장
4. 위 2관련 피신청인 회사가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251 번지(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산 138-5 임야 10,378㎡, 같은 리 산 138-9 임야 734㎡, 같은 리 산 140 임야 12,190㎡) 기재 부동산들을 담보로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외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한, 대출금 입금시부터 현재까지 통장거래 내역서 및 계정원장, 관련 기초자료로서 대출계약서와, 이자 및 원금변제내역서
5. 피신청인 회사가 위 4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관련 회계처리내역서(계정 원장),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서와 가치평가의 근거서류
6. 위 4기재 외 회사가 채무자로서, 또는 제3자의 대위변제로서 이자조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이자지급내역서, 관련하여 그 이자발생의 원인채권내역
7. 대표이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관련, 계정원장, 그 기초자료로서 변제내역이 기재된 통장거래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일체

8. 위 4기재 부동산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주식회사 #####, 합자회사 한라엔지니어링 등 공사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지급내역 일체를 알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과 계정원장, 매입·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9. 위 8과 관련된 서류로서, 공사계약서, 설계도 및 관련 변경·수정 계약서 및 설계도 일체
10. 피신청인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35억원의 보증금 관련, 계정원장, 수령내용이 기재된 통장거래내역서(수령이후 1개월까지), 주식회사 #####과의 세금계산서
11. 위 10관련, 보증금의 현재 보관 및 지출상황을 알 수 있는 은행예금자료 또는 투자관련서류, 35억원이 이미 지출되었다면 그 지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출상황을 알 수 있는 계정원장, 통장거래내역서
12. 위 10과 관련된 서류로서 주식회사 #####과의 임대차계약서. 끝.